

<필독>

- 5급 이상 일반직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안내문 -

본 회에서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 “5급 이상 직원 성과연봉제 미시행” 지도점검결과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.

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미시행시 내년부터 “5급 이상 성과급에 대한 市 보조금을 미교부”한다고 공문으로 지적하였습니다.

본 회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사규정 제27조 등에 의거, 직원의 보수 지급시 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■ 관련근거

□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사규정

- 제27조(보수지급의 원칙)

- ① 봉급 및 제수당은 『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제수당을 준용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

- 제32조(연봉제의 구분 및 대상)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11에 의한다.

. 별표 11(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)

2.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

- 제38조(성과연봉의 지급)

-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(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)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따라서, 본 회에서는 **근로자(행정직, 기술직, 운영직, 지도직)**들의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오니, 첨부 서류를 “**필독**” 하시어 원만하게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5급 이상 일반직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 서명은 **6월 20일 이후부터**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06. 01

인천광역시체육회 경영지원부

- 첨부: 1) 5급 이상 일반직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(안)(공문) 1부.
2) 5급 이상 일반직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“설명자료” 1부.
3) 시 지도점검결과 처분요구서(공문) 1부.
4)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(양식) 1부.
5) 노무사 자문의뢰 회신 공문(노무법인 이수) 1부.
6) 2020년「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부. - 끝-